

영등포구의회
제148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9. 9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9. 9. 3.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제정(제안) 이유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제를 도입하여,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 용역 입찰 및 재계약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여, 생활 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의 업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 폐기물 수집·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대행업체의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 임금지급, 근무복 지급,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을 포함 (안 제6조)

-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, 대행업체로 통보하는 등 평가절차, 평가계획 작성의 기준을 마련(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)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시민·전문가와 함께 8~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(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)
 - 위원장 : 부구청장, 부위원장 : 주민생활지원국장
- 대행업체 평가결과는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, 대행계약 지속이 어려운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)

■ 관련법규

- 「폐기물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서울특별시 대행업체 평가 표준조례 제정(안)」 【서울특별시 클린도시담당관-8663(2009.6.23)】

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없음.

■ 검토의견

- 본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, 그 내용을 보면
- 대행업체의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, 근무복 지급,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(안 제6조)

-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, 대행업체로 통보하는 등 평가절차, 평가계획 작성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(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)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시민·전문가와 함께 8~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하며(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)
- 대행업체 평가결과는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, 대행계약 지속이 어려운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(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)
-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령의 근거와 서울특별시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제출되었으며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현재 8개 업체가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우리구에서는 업체의 경영수지나 청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3~4개 업체로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9. 9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관 련 법 령

■ 폐기물관리법

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고,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

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·개발·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며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